

관	항	계 획 안	수 정 안	증 감	수 정 내 역
사업외수입	이자수입	161,050	123,550	△37,500	○ 시출연금 감액으로 인한 금융기관 예치 이자 감소 161,050→123,550(△37,500)
	전년도이월금	1,394,450	1,394,450		

2.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관	항	계 획 안	수 정 안	증 감	수 정 내 역
합	계	10,185,500	7,148,000	△3,037,500	
사업비	사업비	8,630,000	5,630,000	△3,000,000	○ 유기농산물 판매장설 치 입차료 감액 5,000,000→2,000,000 (△3,000,000)
차입금상환	차입금상환	-	-	-	
여유자금	여유자금	1,555,500	1,518,000	△37,500	○ 금융기관 예치이자 감소로 인한 기금 적립금 감소 1,555,500→1,518,000 (△37,500)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년도 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8.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9.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7. 전년도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8.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9.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① 재정운영상황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당해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등은 시정종합정보센터, 시정종합자료실 및 재정운영상황 공개와 관련된 부서에 비치하여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p>한다.</p> <p>제5조(주민공개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li> <li>2.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li> <li>3.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동을 저해하는 사항</li> </ol> <p>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의 결위,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임시장은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한다.</p> <p>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원의 사기양양 및 심신수련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공무원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 수련원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p> <p>제3조(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련원의 효율적인 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li> <li>2. 수련원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li> </ol> <p>제4조(원장) ① 수련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5조(공무원) 수련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환경관리실(환경보전과) 사무명란 제6호가목중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운행차의 수시점검(단, 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배출가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로 한다.</p> <p>별표 도로국(도로계획·도로관리과) 사무명란 제2호중 “일반터널의 구조·안전관련사항”을 “일반터널”로 하며, 사무명란 제5호중 가목,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가목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조례 별표(도로계획·도로관리과) 사무명란 제5호중 가목 가로청소사무의 경우는 '97.6.30까지 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중 “2,543명”을 “2,538명”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9,736명”을 “9,754명”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청의 감축정원 5명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조례 별표(도로계획·도로관리과) 사무명란 제5호중 가목 가로청소사무의 경우는 '97.6.30까지 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설치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공무</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환경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단체 등에 서울특별시환경상(이하 “서울환경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